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개정 2019.04.17.

개정 2026.02.09.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개정 2026.02.09.>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혜전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사용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최선의 방사선방호를 달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③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방사선시설”이라 함은 방사선을 취급하는 장소와 설비로서 원자력법규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폐기시설을 포함한다.
- ⑤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사용·취급하는 교원 등을 말한다.
- ⑥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실습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1.24.>

## 제2장 방사선방호 행정

제4조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개정 2026.02.09.>

① 조직도는 다음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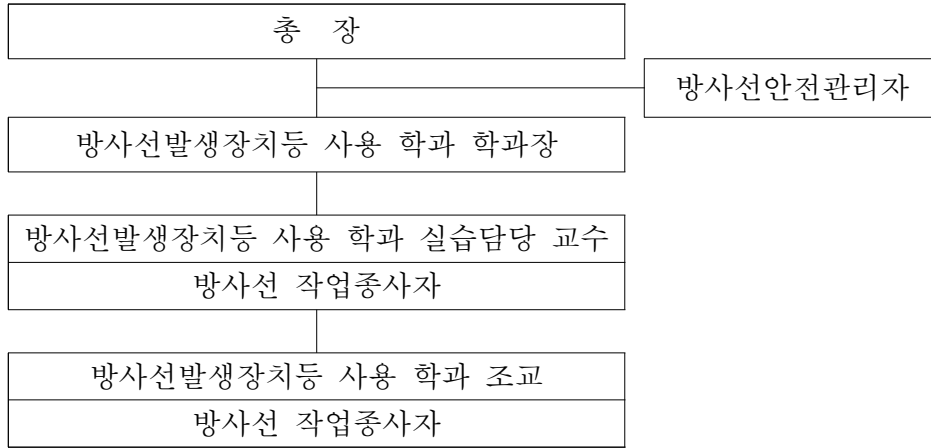


표1.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② 각 조직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은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지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총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3. 학과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받아 학과 내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02.09.>
4. 실습담당교수 및 조교는 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6.02.09.>
5. 실습학생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선발생장치 등 실습을 수행한다.<4호→5호로 이동><개정 2026.02.09.>

제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방사선 장애방어를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총장 및 학과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02.09.>
-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 지시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총장 및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02.09.>

제5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전문신설 2019.04.17.>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는 본교 교직원중 원자력안전법령의 대리자 인력기준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며, 대리자 지정시 [별표 3]의 지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02.09.>

### 제3장 방사선장해 예방 조치

#### 제6조 (방사선관리구역)

- ①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
- 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은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09.>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방사능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③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해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수행하며, 해제 기준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이하일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6.02.09.>

#### 제7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개정 2015.10.08.>

- ① 방사선관리구역 안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허락을 받고 동행하여야 한다.
- ②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습 교육 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조작하며, 인체 조사를 절대 금하고 교육용 인체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7.01.24.>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구역에 출입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한다. <개정 2017.01.24.>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7.01.24.>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대행기관의 판독업무자가 수행

하도록 한다.

4.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관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신설 2026.02.09.>

#### 제9조 (측정)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량률 측정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 제10조 (기록 및 장부의 보존)

- ① 기록 및 장부의 보존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6.02.09.>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2.09.>
  1.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방사선량률 측정: [별표2]
  2.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피폭, 건강진단, 교육 등): [별표4]
- ③ 다만,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추정하되 추정치임을 표기한다.<신설 2026.02.09.>

#### 제11조 (교육훈련)

-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교육훈련은 원자력안전법령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01.24.>
- 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장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01.24.>
  1. 방사선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2.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3. 방사선 장해방어
  4. 기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③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기관의 위탁교육(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1.24.>

#### 제12조 (건강진단)

-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은 원자력안전법령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1.24.>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개정 2017.01.24.>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개정 2017.01.24.>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신설 2017.01.24.>

제13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해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시간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의 조치와 의사에 의한 진단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상)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 및 손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제15조 (장비의 보정 등)

- ① 방사선 측정기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검·교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정 하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고,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 측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험시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장소·원인·상황 및 안전조치내용 등에 관하여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때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
3. 방사선관리구역 내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17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 ①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유해가스의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관리구역 내 취급자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 등에 고장이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고장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방사선관리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 피난 등의 긴급조치

②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18조 (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1. 본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
-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
- 4. 만 18세 미만인 자
- 5. 기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9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안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lt;개정2017.01.24.&gt;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신고사용자는 제외)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사용, 분배, 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5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신설2017.1.24.>	매분기 1회	5년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신설2017.1.24.>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9)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신설2017.1.24.>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상호		
	주소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방사선안전관리자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면허 또는 자격사항	취급경력	교육이력	
지정내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대리자						
	대리기간						
	대리사유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 방사선작업종사자 인사기록카드(제1면)

[사진]							관리번호	
	성명 (영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소속		직위			근무처		
	종사자 등록일		면허정보		면허번호 제 호	퇴직일		

과거경력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과거 방사선 작업 종사경력 없을 시 작성하지 않음						
근무처	종사 기간		수행업무 및 특이사항					
	~							
	~							
	~							
	~							
	~							
과거 5년간 피폭선량(mSv)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전 교육훈련			
20	년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0	년	검진기관						
20	년	판정결과						
20	년	특이사항						
20	년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인)	

연도	피폭선량(mSv)		건강진단	교육훈련		
	분기	표층 / 심부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연도	피폭선량(mSv)		건강진단	교육훈련		
	분기	표층 / 심부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 방사선작업종사자 인사기록카드(제2면)

성명						
연도	피폭선량(mSv)		건강진단	교육훈련		
	분기	표층 / 심부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인)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인)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인)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인)	
20	1분기		검진일자		과정명      일자(시간)	
	2분기		검진기관			
	3분기		판정결과			
	4분기		특이사항			
	년누적		본인확인	(인)	안전관리자확인      (인)	

※비고: 기록란 부족 시 제2면을 계속 복사하여 사용함